

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의2] <개정 2021. 4. 20.>
보호소년등의 포상기준(제29조 관련)

포 상 종 류	포 상 기 준
우 수 상	1. 전국단위 각종 외부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 2. 상급학교 진학시험, 각급학교 검정고시 등에서 수석·차석·최연소성적을 거둔 자
기 능 상	직업능력개발훈련관련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
모 범 상	1. 생활태도가 성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 2. 봉사정신이 투철하고, 다른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선행을 한 자
공 로 상	1. 학생 자치활동과 규범생활, 안전관리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. 수용사고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